

11.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

●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

[일부개정 2004.1.16 법률 7061호]
(한시법: 2014.12.31)

제1조 (목적) 이 법은 농림수산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생활환경개선 및 농어민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확보된 농어촌특별세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(이하 "이 회계"라 한다)를 설치하고,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회계의 운용·관리) ①이 회계는 농림부장관이 운용·관리한다. <개정 1996.12.12>

②이 회계의 세출예산은 중앙관서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다.

제3조 (회계의 세입 및 세출) ①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. <개정 1996.12.12, 1997.12.13, 1999.12.31>

1. 농어촌특별세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액
2.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원리금 수입
3.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상 잉여금
4. 재정융자특별회계법에 의한 재정융자특별회계로부터의 예수금
5.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
6. 기타 수입금

②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

다. <개정 1996.12.12, 2004.1.16>

1. 농림수산업경쟁력강화, 농어촌생활환경개선 및 농어민후생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별표에서 정하는 대상사업중 농림부·농촌진흥청·산림청 및 해양수산부 소관사업외의 사업에 대한 투자·보조·융자 및 출연
 2. 농림수산업경쟁력강화, 농어촌생활환경개선 및 농어민후생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별표에서 정하는 대상사업중 농림부·농촌진흥청·산림청 및 해양수산부 소관사업에 대한 투자·보조·융자 및 출연을 위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농어촌특별세전입금사업계정으로의 전출금
 3.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시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부담액의 지원을 위한 교부금
 4.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사업계정으로의 전출금
 5.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예수금의 원리금상환
 6. 이 회계의 운용·관리에 소요되는 경비
- ③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예수금은 동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의 세입이 1조 5천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 회계의 세입으로 할 수 있으며,

그 예수금의 원리금은 당해연도의 세입이 1조 5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하여 상환하여야 한다. <신설 1996.12.12>

제4조 (융자조건등) 이 회계의 융자사업의 융자금리와 융자기간등은 소관중앙관서의 장이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. <개정 1996.12.12>

제5조 (일시차입) ①이 회계는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당해 회계연도 내에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.

제6조 (세출예산의 이월) 이 회계의 세출예산은 예산회계법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제7조 (잉여금의 처리)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에 세입에 이입한다.

제8조 (예비비)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.

부칙 <제4771호, 1994.8.1>

①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유효기간) 이 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 <개정 2003.12.31>

③(채권·채무의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)

이 법의 효력이 종료되는 당시의 이 회계의 채권·채무등 모든 권리 및 의무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가 이를 승계한다.

④(세입에 관한 경과조치) 1994년 7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전에 징수된 농어촌특별세액은 이 회계의 세입으로 한다.

부칙 <제5183호, 1996.12.12>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) <제5454호, 1997.12.13>

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부칙(국채법) <제6075호, 1999.12.31>

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및 제3조 생략

제4조 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내지 ⑨생략
⑩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5.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

⑪내지 <16> 생략

부칙(농어촌특별세법) <제7026호, 2003.12.31>

①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다른 법률의 개정)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법률 제4771호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 부칙 제2항중 “2004년 12월 31일”을 “2014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부칙(국가균형발전특별법)〈제7061호, 2004.1.16〉

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…〈생략〉… 부칙 제2조 내지 제5조의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내지 **제4조** 생략

제5조 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내지 ④생략
 ⑤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사업계정으로의 진출금

⑥내지 ⑨생략